

2023년도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 계획 공고

우수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파법 제5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파인증(적합성평가) 시험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도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6일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중 매출액 100억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전파법 제58조의2에 의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전파인증(적합성평가) 시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제품 출시 활성화

□ 주최/주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전파진흥협회(전자파기술원)

□ 지원 내용

- 지원규모 : 3.28억원 ('23년)
-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 제품을 선정하고, 정부보조금 한도내에서 기업규모에 따라 [별표 2] 적합성평가 기준별 표준단가의 70~90%(1개 제품 당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를 차등 지원

기 준	지원비율
매출액 10억원 미만	90%
매출액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전년도 매출액 기준 100억 이상 기업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70%

- 사업 기간 중 기업당 최대 1개 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시험수수료) 지원
※ 인증비(적합성평가수수료) 및 면허세 제외

□ 신청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매출액 100억 미만 기업이 자체개발하여 전파법에 의한 적합성평가(적합인증 및 적합등록)를 받은 제품

구분	1회차 신청대상	2회차 신청대상	3회차 신청대상
적합인증(등록)일	'22.1.16 ~ '23.1.15	'22.4.3 ~ '23.4.2	'22.8.1 ~ '23.7.31

- ※ 적합인증(등록) 획득 전 제품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제품의 적합인증일 또는 적합등록일이 회차별 신청·접수 시작일 이전 1년 이내)
- ※ 전년도 매출액 기준 100억 이상 기업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 국내 중소기업 개발 제품만 신청 가능(OEM 등 해외 제조방식 가능, 단순 수입제품 불가)
- ※ 적합성평가 변경 신고 건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가점부여

- 창업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Inno-Biz기업, 벤처기업, 녹색기업

< 신청 제한조치 >

- 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제품에 대한 인증 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다만,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지원금 지급 이전에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 분야

- [별표 1]의 적합성평가(적합인증 및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참조
- ※ 적합등록 대상기자재의 경우,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는 제외

2. 신청요령

□ 추진 일정

구분	1회	2회	3회
신청·접수	'23.1.16 ~ 3.3	'23.4.3 ~ 5.19	'23.8.1 ~ 9.22
평가·선정	'23.3.6 ~ 3.31	'23.5.22 ~ 6.30	'23.9.25 ~ 10.31
지원금 지급	'23. 3월말	'23. 6월말	'23. 10월말

- ※ 지원일정은 변동 가능

□ 신청서 작성 및 등록

- 신청기업은 전자파기술원(www.emti.or.kr)에 접속하여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 바로 가기] → [지원신청] 메뉴에서 [첨부파일] '온라인 지원 신청 매뉴얼'을 참조하여 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등록

※ 등록한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회차별 신청·접수기간에는 수정이 가능하나 해당 회차별 마감일 이후에는 수정·등록 불가

※ 신청 및 접수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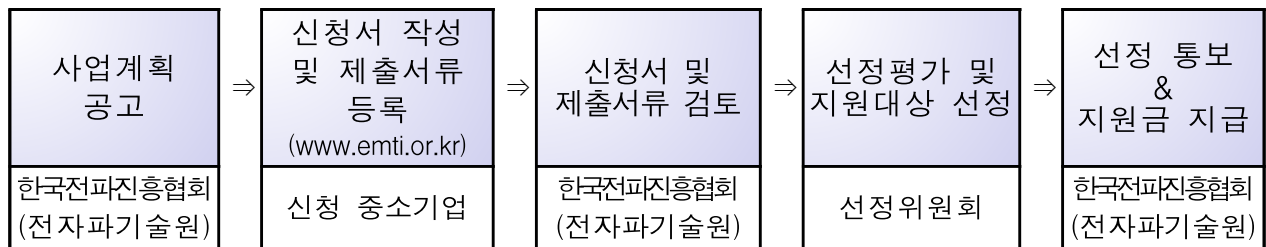
< 공지 및 유의사항 >

- 지원신청서와 첨부서류 대조결과 지원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했음이 판명됐을 경우 해당 기업에는 규정에 따라 참여 제한 등의 조치 예정

□ 신청 구비서류

- [별첨] 신청기업 구비서류 참조

3. 사업지원 절차



4. 기타 공지사항

- 신청 취소 및 참여제한
 - 신청 제한조치 대상기업이 신청한 경우
 - 신청 구비서류의 허위제출(기재)등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반납하여야 하고, 2년간 참여 제한 조치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동 '사업 운영지침'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 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5. 문의처

- 우)04363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41길 29(원효로3가 1-154번지) 전자파기술원
-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 담당자
TEL : 02-703-2453 / E-mail : ksu@rapa.or.kr

【별첨】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 신청기업 구비서류

○ 필수 제출서류 : 온라인 업로드

필수 제출 서류	비 고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 필증 사본 1부	- 최초 인증서만 해당 (변경신고 건은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인증서상 제조사가 해외 제조사일 경우 자체 개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예, OEM 계약서 등) 추가 제출
③ 시험기관 발급 공식 시험성적서 사본 1부(성적서 전체본)	- 신청제품의 시험항목별 모든 성적서 첨부 (파일이 여러 개일 경우 하나의 압축파일로 업로드) ※ 첨부된 시험 성적서 기준으로 지원금액 산정 (성적서 누락 시 지원금액 산정 시 미반영)
④ 시험수수료 증빙서류 : - 세금계산서 사본 1부, - 송금내역서(입금증) 사본 1부 등	- 시험비용 수수료에 대한 증빙서류 ※ 카드 결제의 경우 견적서·거래명세서 및 신용카드 영수증 제출 가능 (파일이 여러 개일 경우 하나의 압축파일로 업로드) - 세금 계산서 상 여러 개의 모델의 비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을 경우, 신청제품의 시험비용에 대한 거래명세서, 견적서 등 추가 서류 제출
⑤ 전년도 손익계산서 사본 1부	- '23년도 창업기업의 경우 해당 없음 - 제출 불가 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제출
⑥ 전년도 12월 기준 상시근로자 수 증빙서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1부	- '23년도 창업기업의 경우 해당 없음 - 전년도 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⑦ 기타서류	- 인증서상 제조사가 해외 제조사일 경우 자체 개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예, OEM 계약서 등) 제출

○ 기타 평가항목별 제출서류 : 해당 시 온라인 업로드

평가항목		제출서류 (해당기업에 한함)
신제품·신기술	NET	○ 신청제품관련 증빙서류 사본 * 개인기업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명으로 등록 된 경우만 인정
	NEP	
산업재산권	특허	○ 신청제품관련 특허 등록/출원 사본 ○ 신청제품관련 실용신안 등록/출원 사본 * 개인기업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명으로 등록 된 경우만 인정
	실용신안	
연구시설, 기술개발전담자 유무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가점	창업기업	○ 제출 생략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 증빙서류 사본
	Inno-Biz기업	
	벤처기업	
	녹색기업	
사업화 가능성		○ 신청제품 국내외 납품/판매/공급 계약서(세금계산서) 사본 ○ 신청제품 국내외 전시회 참가 증빙서류 ○ 신청제품 카타로그 ○ 홈페이지에서 신청제품 소개 증빙서류(홈페이지 캡처 등)

○ 선정기업 제출서류 : 최종 선정 후 별도 제출

- [별지 제5호] 지원금 교부 신청서 1부
- 지원금 지급을 위한 기업명의 통장 사본 1부
- 부정수급 및 중복수혜 관련 확인 동의서 1부
- 신청자격 확인서 1부

※ 해당 신청서는 참고용이며, 온라인으로 작성

【별지 제1호】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 20 -0회--00)

☐ 신청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설립 년월일		사업의 종류(업태)		사업의 종류(종목)	
주 소 (홈페이지)					
실무 책임자	직책 : 성명 :	전화 (FAX)		핸드폰 (E-mail)	
상시 근로자수	전전년도 전년도	명 명	주요생산품목		
매출액	전전년도	천원	수출액	전전년도	천불
	전년도	천원		전년도	천불

☐ 신청내용

기기명칭		기본 모델명	
적합성평가 구분	☐ 적합인증		☐ 적합등록
	인증 또는 등록번호 ()		
	인증 또는 등록연월일 (년 월 일)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 무선 ☐ 유선 ☐ EMC ☐ SAR ☐ 전자파강도		
지정시험기관명			
시험수수료	원		

☐ 제품 및 기업 특성

제품의 용도 및 기능	
신제품·신기술	■ NET() ■ NEP()
산업재산권	■ 특허등록() ■ 특허출원() ■ 실용신안등록() ■ 실용신안출원()
연구시설, 기술개발전담자 유무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전담부서() ■ 일반부서와 병행()
기술수준 및 차별성	
사업화 가능성	■ 국내외 납품/판매/공급 계약서() ■ 국내외 전시회 참가() ■ 제품 카타로그() ■ 홈페이지 제품소개()
시장 경쟁력	
가점	■ 창업기업() ■ 장애인기업() ■ 여성기업() ■ 사회적기업() ■ Inno-Biz기업() ■ 벤처기업() ■ 녹색기업()

당사는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자

인

한국전파진흥협회장 귀하

※ 첨부서류 : [별첨]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 신청기업 구비서류 참조

※ 해당 신청서는 참고용이며, 온라인으로 작성

【별지 제2호】

제품 상세 설명서

업체명		기기명칭 (기본모델명)	
제품 특성	(제품의 용도, 기능, 주요 기술 위주로 기술의 특성 등 기재)		
o 제품명 : 용도 확인이 가능한 제품명으로 기재(예시, 차량용 블랙박스, 무선 AP 등) o 제품사진 : 최소 1장 최대 2장 업로드 o 제품사진 : 제품 사진은 jpg, png 등 사진 파일로 업로드 하며 pdf, ppt 파일로 업로드 불가 ※ 제품명, 제품사진 필수 반영(jpg, png, 등 이미지 파일 형태로 업로드)			
기술 및 시장 현황	(국내외 관련기술의 현황 및 시장규모, 전망, 국내외 개발동향 등 기재)		
제품 경쟁력 & 기술 우수성	(국내외 경쟁 기술 및 기술적 차별성, 국내외 타사 제품 대비 상품성, 시장 경쟁력, 품질의 우수성, 산업재산권, 공인 인증 등 기재)		
전과인증 진행시 애로사항	(국내 적합성 평가 시험 및 인증 진행시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기재)		

※ 해당 신청서는 참고용이며, 온라인으로 작성

【별지 제3호】

동의서(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등)

귀 기관이 본인으로 부터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의 신용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2조 및 제 34조 규정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 조회, 활용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를 한국전파진흥협회 “중소기업 우수 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의 참여 및 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용 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써 활용하거나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아울러, 본인이 제출한 제반서류(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 일체)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결정 취소, 참여제한 등이 되며 既지원 받은 금액은 전액 환수하는데 동의합니다.

* 제공할 정보의 내용

-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법인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 본인과 관련된 기업의 재무정보
- 본인과 관련된 기업의 기타 정보 등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 법인사업자

- 법인명 : _____
- 동의자(대표자) 성명 : _____ (인)

■ 개인사업자

- 기업명 : _____
- 동의자(대표자) 성명 : _____ (인)

※ 해당 신청서는 참고용이며, 온라인으로 작성

【별지 제4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 ○
대표자 ○ ○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해당 신청서는 참고용이며, 온라인으로 작성

【별지 제4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 ○
대표자 ○ ○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해당 신청서는 최종선정 업체만 작성(신청 시 제출안해도 됨)

【별지 제5호】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 부정수급 및 중복수혜 관련 확인 및 동의서

① 부정수급 금지

- 아래 확약인은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아래 확약인이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신청 당시 제출한 모든 신청내용, 증빙서류, 유사사업 참여 등 지원요건 관련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보조금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부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보조금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부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구분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최대)
지원금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지급받은 경우	500%
수령자	2)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 (☐ 동의 ☐ 미동의)

② 중복수혜 금지

- 본인은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중복수혜금지 대상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중복으로 신청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 만일, 지원한 제품에 대하여 전파인증 시험비용에 대하여 중복으로 수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지원금액 전액회수에 동의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약속합니다.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 (☐ 동의 ☐ 미동의)

③ 지원금 오지급 시 반납 동의

- 상기 본인은 지원받은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 사업”에 대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오지급금 전액을 반납함을 동의합니다.

1. 신청인의 부정확한 정보 입력으로 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
2. 정보 입력자의 기재 오류로 인해 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
3. 기타 신청인이 해당 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 (☐ 동의 ☐ 미동의)

④ 제출서류 사실관계 확인

- 상기 본인이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한 ①신청서와 관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②증빙서류는 모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만약, 위 ①, ②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보조금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5배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부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 (☐ 동의 ☐ 미동의)

상기 본인은 위 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의 신청 및 지원이 불가합니다.

상기 본인은 위의 사항을 확인하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동의자(대표자)

(인, 서명)

※ 해당 신청서는 최종선정 업체만 작성(신청 시 제출안해도 됨)

【별지 제6호】

중 소 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 신청자격 확인서

항목	해당여부	비고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 예 / ☐ 아니오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 예 / ☐ 아니오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예 / ☐ 아니오	
직전년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 가능)	☐ 예 / ☐ 아니오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예 / ☐ 아니오	

확 인	기업명	
	대표이사	(인)

※ 해당 신청서는 최종선정 업체만 작성(신청 시 제출안해도 됨)

【별지 제7호】

지원금 교부 신청서

○ 신청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실무 책임자	직책)	전 화		E-mail	
	성명)	FAX		핸드폰	

○ 지원금 지급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 은행계좌는 반드시 신청기업의 통장이어야 하며, 예금주는 신청기업이 법인인 경우 법인명이 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명이어야 한다.

붙임 : 지원금 지급을 위한 기업명의 통장 사본 1부.

당사는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제품으로 선정되었기에,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업체명)

(대표자)

(인)

한국전파진흥협회장 귀하

【별표 1】

지원대상 제품 선정 평가표

- 신청기업명 :
 ○ 기기명칭 :
 ○ 적합성평가 구분 : [] 적합인증 , [] 적합등록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 가 기 준	비고	평가점수															
기업의 영세성 (30점)	매출액	15점	○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미만 (15점) ○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3점) ○ 전년도 매출액 50억원 이상 (11점) ※ 사업연도(22년) 창업기업은 위 평가기준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미만'으로 평가																	
	상시 근로자 수	15점	○ 전년도 근로자수 10명 미만 (15점) ○ 전년도 근로자수 10~50명 미만 (13점) ○ 전년도 근로자수 50명 이상 (11점) ※ 사업연도(22년) 창업기업은 위 평가기준 '전년도 근로자수 10명 미만'으로 평가																	
기술성 (30점)	신제품·신기술 인증 보유	10점	○ 신청제품이 NEP 신제품 인증을 득한 경우 (10점) ○ 신청기업이 NET 신기술 인증을 득한 경우 (8점) ○ 미보유 (6점)	정량																
	산업재산권 보유	10점	○ 특허등록(또는 실용신안등록) 기술의 신청제품 적용 (10점) ○ 특허출원(또는 실용신안출원) 기술의 신청제품 적용 (8점) ○ 미보유 (6점)																	
	연구시설, 기술개발 전담자 유무	10점	○ 기업 부설연구소 (10점) ○ 연구 전담 부서 (8점) ○ 일반부서와 병행 (6점)																	
제품 경쟁력 (40점)	기술수준 및 차별성	20점	<table><tr><td colspan="5">제품의 기술수준, 타사 제품 대비 차별성, 우수성</td></tr><tr><td>매우 우수</td><td>우수</td><td>보통</td><td>미흡</td><td>매우 미흡</td></tr><tr><td>18~20</td><td>16~17</td><td>13~15</td><td>10~12</td><td>0~9</td></tr></table>	제품의 기술수준, 타사 제품 대비 차별성, 우수성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8~20	16~17	13~15	10~12	0~9	정성	
	제품의 기술수준, 타사 제품 대비 차별성, 우수성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8~20	16~17	13~15	10~12	0~9																
시장 경쟁력	20점	<table><tr><td colspan="5">국내외 시장의 종합적 경쟁력</td></tr><tr><td>매우 우수</td><td>우수</td><td>보통</td><td>미흡</td><td>매우 미흡</td></tr><tr><td>18~20</td><td>16~17</td><td>13~15</td><td>10~12</td><td>0~9</td></tr></table>	국내외 시장의 종합적 경쟁력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8~20	16~17	13~15	10~12	0~9			
국내외 시장의 종합적 경쟁력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8~20	16~17	13~15	10~12	0~9																
합계		100																		
가점 (6점)	Inno-Biz기업 등	2점	○ Inno-Biz기업, 벤처기업, 녹색기업 (건당 1점, 최대 2점)	정량																
	창업기업 등	4점	○ 창업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건당 2점, 최대 4점)																	

평 가 의 건	
---------	--

평가위원 : (인)

【별표 2】

적합성평가 기준 적용분야

- 국립전파연구원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의 '[별표 1] 적합인증 대상기자재'와 [별표 2]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의 적합성 평가기준 적용분야 참조(국립전파연구원 웹사이트 : <http://rra.go.kr>)

【별표 3】

적합성평가 기준별 표준단가

1. 적합인증 대상 기자재의 전자파적합성(EMC) 표준단가

□ 시험종목

시험종목
KN 301 489-1(무선 설비기기류의 공통)
KN 301 489-1(무선 설비기기류의 공통/차량용서지시험제외)
KN 301 489-2(무선호출용 무선설비)
KN 301 489-3(특정소출력 무선기기)
KN 301 489-5(간이무선국)
KN 301 489-6(디지털 코드없는 전화기)
KN 301 489-6(디지털 코드없는 전화기/음압시험제외)
KN 301 489-7(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 및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
KN 301 489-7(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 및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음압시험 제외)
KN 301 489-9(음성 및 음향신호전송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KN 301 489-13(생활무전기)
KN 301 489-15(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
KN 301 489-17(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KN 301 489-18(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
KN 301 489-18(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음압시험 제외)
KN 301 489-20(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
KN 301 489-24(이동통신용 무선설비)
KN 301 489-24(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음압시험제외)
KN 301 489-26(이동전화용, 개인휴대전화용, 이동통신용기지국, 무선중계기, 보조기기)
KN 301 489-27(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
KN 301 489-32(지반탐사 및 벽면탐사 레이더)
KN 301 489-50(5G 이동통신 등의 기지국, 중계기, 보조기기)
KN 301 489-52(5G 이동통신 등의 단말기, 보조기기)

□ 기본단가

[단위 : 원]

제 품 구 분					
휴대용기기 (주1)	DC소형 제품(주2, 3)	AC소형 단상(주3)	AC중형 단상(주4)	AC대형 단상(주5)	AC대형 3상(주5)
1,050,000	1,800,000	1,900,000	2,350,000	2,950,000	4,150,000

(주1) 휴대용기기 : 내장 배터리 전원을 사용하는 기기로서 외부 전원이 없는 기기

(주2) DC소형제품 중 차량용 제품은 차량 환경에서의 과도현상 및 서지 시험 수수료 추가

(주3) 소형 : 20kg 미만의 제품으로서 1인 운반/설치 가능한 제품

(주4) 중형 : 20kg 이상 60kg 미만의 제품으로서 2인이 운반/설치 가능한 제품

(주5) 대형 : 60kg 이상의 제품으로서 3인 이상이 운반/설치하는 제품

□ 추가 사항

- 시험모드가 2이상일 경우의 표준단가는 기본단가 외에 아래 계산식과 같이 시험 모드수(시험 횟수)에 따른 추가단가를 부가하여 산정한다.

$$\text{표준단가} = \text{기본단가} + \text{추가단가} = \text{기본단가} + \{1/2(\text{시험모드} - 1) \times \text{기본단가}\}$$

- 주요 제품별 시험 모드수는 다음과 같다.

- WLAN bgn : 1 시험모드
- WLAN abgn : 2 시험모드(2.4 GHz, 5 GHz)
- Bluetooth : 1 시험모드
- 휴대폰 : 6 시험모드(음성통화, BT, WLAN, mega Camera, MP3 or MP4, USB link)
- 중계기 : 제품에 따라 선택(1 ~ 4 시험모드)

- 부가가치세(VAT)는 제외 금액임

2. 적합인증 대상 기자재의 무선 표준단가

□ 기본단가

시험종목	기본단가 [단위 : 원]
무선전화정보 자동수신장치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3]의 제2항(적합성 평가 시험 수수료) 가. 무선분야, 나. 무선분야(구 형식검정)에서 규정하는 시험수수료
무선방위측정기	
의무항공기국에 시설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정보자동전화장치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8조(중단파대, 단파대 무선전화 및 단파대 데이터링크 장치)의 무선설비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 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0조(단측파대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무선설비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13조(단측파대 무선전화장치)의 무선설비	
선박국용 레이더기기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2조(초단파대 양방향 무선전화장치) 및 제14조(G3E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조건)의 무선설비	
디지털 선택호출장치의 기기	
협대역 직접인쇄전신장치의 기기	
디지털 선택호출장치 등을 이용하여 해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용 무선설비	
디지털 선택호출 전용 수신기	
네비텍스수신기	
수색구조용 위치정보 송신장치의 기기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기기	
자동 식별장치	

시험종목		구 분	기본단가 [단위 : 원]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			1,300,000
기상원조용 무선설비	라디오존데		1,100,000
	라디오로봇트		1,200,000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			1,500,000
의료용 전파응용설비			1,200,000
무선호출국용 무선설비	공중통신용		1,500,000
	자 가 용		1,400,000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이동국		1,400,000
	기지국		1,500,000
	중계장치		1,300,000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이동국		1,600,000
	기지국		1,600,000
	중계장치		1,400,000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이동국		1,400,000
	기지국		1,500,000
	중계장치		1,300,000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이동국		1,500,000
	기지국		1,500,000
	중계장치		1,300,000
무선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			1,500,000
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			1,700,000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1,300,000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	공중통신용	아날로그방식	1,500,000
		디지털방식	1,300,000
	자카통신용	아날로그방식	1,500,000
		디지털방식	1,300,000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1,200,000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1,600,000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HF대		1,500,000
	VHF/UHF대		1,300,000
가입자회선용 무선설비의 기기			1,400,000
긴급무선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1,600,000

시험종목		구 분	기본단가 [단위 : 원]	
방송제작 및 공연지원용 무선설비의 기기		아날로그	1,300,000	
		디지털	1,200,000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1,100,000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			1,200,000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설비의 기기			1,300,000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무선조정용	1,100,000	
※ 기타용도 : 데이터전송용/음성 및 음향신호전송용/도난, 화재, 경보장치 등의 안전시스템용/중계용/이동체식별용/소형기 지국용/차량충돌방지용 레이더 등		무선데이터 통신시스템용	1,300,000	
		기타용도	1,400,000	
		RFID/USN용 무선기기		900MHz대역
900MHz대역	FHSS방식			1,300,000
	기타대역			13.56MHz 등
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			2,100,000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			1,100,000	
코드없는 전화기		아날로그방식	1,300,000	
		디지털방식	1,500,000	
UWB 및 용도미지정기기(UWB기기 한함)		3.1~4.8GHz대역	1,500,000	
		7.2~10.2GHz대역	1,300,000	
UWB 및 용도미지정기기(용도미지정기기)			1,700,000	
UWB 및 용도미지정기기(점대점 고정통신용기기)			1,800,000	
단측파대 전파를 사용하는 단일통신로의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기(형식검정 대상기기를 제외한다)		송·수신장치	1,900,000	
		송신장치	1,600,000	
		수신장치	1,200,000	
비상통신 보조용 무선설비			1,300,000	
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			1,300,000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		이동국	1,600,000	
		기지국	1,600,000	
		중계장치	1,400,000	
해상조난자 위치발신용 무선설비			1,300,000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		이동국	1,600,000	
		기지국	1,600,000	
		중계장치	1,400,000	

시험종목		구 분	기본단가 [단위 : 원]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			1,600,000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600,000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		차폐된 구조물에서 사용하는 기기	1,600,000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		개방된 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기	1,600,000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28 GHz 대역	이동국	7,500,000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기지국	7,500,000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중계장치	7,500,000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3.5 GHz 대역	이동국	5,000,000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기지국	5,000,000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중계장치	4,800,000

□ 추가 사항

- 기종 또는 방식이 2이상인 복합무선기기의 경우에는 당해 기기마다의 기본단가를 합산한 금액으로 함
- 2이상의 기능을 갖는 다음 기기의 경우 당해 기능시험마다 기본단가의 50%를 추가 적용함(단, 1개의 제품에 2이상의 복합기능이 내장될 경우 위의 50%내에서 적용)
 - 2이상의 입력전원을 갖는 기기(예 : AC, DC공통전원 사용기기)
 - 운용주파수대역이 2이상인 기기(예 : 단파대용 아마추어기기)
 - 광대역/협대역기기(예 : V/UHF 무선기기)
 - 연속적 또는 단계적 출력가변기기(예 : 중계기, 전력절감형기기)
 - 2이상의 전파형식을 갖는 기기(예 : 제어채널을 갖는 기기)
 - 2이상의 통신방식을 갖는 기기(예 : 무선LAN의 OFDM, DSSS 등)
 - 2이상의 통신속도 및 변조방식을 갖는 기기(예 : 무선LAN의 IEEE802.11b,g 등)
 - 2이상의 송신 출력단을 갖는 기기(예 : 무선LAN중 다중 송신단을 갖춘 경우)
 - 2이상의 장치를 갖는 기기(예 : 코드없는전화기의 휴대장치, 고정장치 등)
 - 2이상의 송·수신안테나를 갖는 기기(예 : 양방향중계기)
 - 기타 시험성적서가 추가로 발급될 수 있는 사항
- 부가가치세(VAT)는 제외 금액임
- 부가가치세(VAT)는 제외 금액임

3. 적합인증 대상 기자재의 유선 표준단가

□ 기본단가

시험종목		기본단가 [단위 : 원]
루프스타트 방식의 기기		1,100,000
극성반전/타이트링크/구역외 구내가입자 인터페이스/전용회선 (링다운, 실선대역내 포함)방식의 기기		1,300,000
전용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64kbps이하)		1,100,000
전용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2,048kbps)		1,100,000
전용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44,736kbps)		1,100,000
사업용 방송통신설비에 접속되는 기타 디지털 단말장치		1,100,000
유선방송설비와 단말장치간의 접속장치		1,100,000
비대칭 디지털가입자회선 접속장치		1,500,000
초고속 디지털가입자회선 접속장치		1,500,000
종합 유선방송국 주 전송장치류		2,500,000
방송 공동수신 설비류	수동소자	700,000
	능동소자	2,500,00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가입자 단말장치		1,100,00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가입자 단말장치(제한 수신시험 제외)		1,100,000
광통신용 회선 종단장치		1,300,000
기가급 초고속디지털 가입자 회선 접속장치		1,500,000
수동형 광선로설비와 단말장치간의 접속장치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3]의 제2항(적합성평가 시험 수수료) 라. 유선분야에서 규정하는 시험수수료
방송공동수신설비류(제한수신시험 제외)		
방송공동수신설비류(제한수신시험, 증폭기시험 제외)		
방송공동수신설비류(제한수신시험, 증폭기시험, 광증폭기시험, 광 송신기 및 수신기시험 제외)		

□ 추가 사항

- 추가단가는 카드회선 종류 당 25만원 (64kbps, 2,048kbps, 44,736kbps, 155,520kbps)
- 부가가치세(VAT)는 제외 금액임

4. 적합인증 대상 기자재의 SAR 표준단가

□ 기본단가

시험종목		기본단가 [단위 : 원]	
		두부	몸통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		3,000,000	3,000,000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400MHz 이상)		3,000,000	3,000,000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		3,000,000	3,000,000
무선호출국용 무선설비	100MHz 대역	-	3,000,000
	270~470MHz 대역		
	900MHz 대역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3,000,000	3,000,000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3,000,000	3,000,000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		3,000,000	3,000,000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3,000,000	3,000,000
900MHz대의 무선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		3,000,000	3,000,000
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	100MHz 대역	3,000,000	3,000,000
	1.6GHz 대역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	300MHz 대역	3,000,000	3,000,000
	800MHz 대역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		3,000,000	3,000,000
방송제작 및 공연지원용 무선설비		3,000,000	3,000,000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		-	3,000,000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5.0GHz 대역	3,000,000	3,000,000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2.4GHz 대역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5.0GHz 대역		
RFID/USN용 무선기기	900MHz 대역	3,000,000	3,000,000
코드없는 전화기	1.7GHz 대역	3,000,000	3,000,000
	2.4GHz 대역		
비상통신 보조용 무선설비		3,000,000	3,000,000
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		3,000,000	3,000,000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3,000,000	3,000,000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GHz 대역)		3,000,000	3,000,000

□ 추가 사항

- ① SAR 측정은 기자재별로 시험이 크게 상이하지 않으므로 기본단가에 대역 및 모드의 추가 단가로 구분하여 산정함

구 분	추가단가 [단위 : 원]	
	두부	몸통
추가 대역/모드	1,800,000	1,800,000

- ② 기본단가는 1 대역, 1 모드에 대한 비용임
- ③ 기자재의 무선대역/모드별 평균전력을 측정하여 공중선전력이 20 mW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추가 시험이 실시되므로 기본단가에 공중선전력이 20 mW를 넘는 대역, 모드에 대한 추가단가를 산정하여 합산한다.
- 예) 추가단가 = 추가 대역, 모드수 × 추가대역/모드요율
- ④ 두부, 몸통 SAR 측정이 모두 필요한 기자재의 경우 두부, 몸통 각각의 기본단가에 두부, 몸통에 대한 각각의 추가단가를 ③에서와 같이 산정하여 합산한다.
- ⑤ 무선방식(예, 무선랜+WCDMA+LTE 등) 이 여러개인 복합무선기자재의 경우 각각의 방식에 대해 기본단가에 부가하여 추가단가를 산정하여 합산한다.
- ⑥ 부가가치세(VAT)는 제외 금액임

5.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의 전자파적합성(EMC) 표준단가

□ 시험종목

시험종목
KN 11(산업, 과학, 의료용 기기류)
KN 11(산업, 과학, 의료용 기기류/자기장세기 시험 제외)
KN 11(산업, 과학, 의료용 기기류/유도전류 시험 제외)
KN 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자기장 세기 및 유도전류 시험제외)
KN 13(방송수신기 및 관련 기기류)
KN 14-1(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KN 14-1(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자기장세기 시험 제외)
KN 14-1(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유도전류 시험 제외)
KN 14-1(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자기장세기 및 유도전류 시험 제외)
KN 15(조명기기류)
KN 15(조명기기류/삽입손실시험제외)
KN 19(전자레인지로부터 방사되는 주파수 1GHz이상)
KN 22(정보기기류)
KN 41(자동차 및 내연기관 구동기기류)
KN 50(전기철도기기류)
KN 60(전력선통신기기류)
KN 62040-2(무정전전원장치/EMS공통)
KN 62040-2(무정전전원장치/EMS공통, 16A이상 시험 제외)
KN 60947(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EMS공통)
KN 61000-6-3(주거, 상업 및 경공업환경)
KN 61000-6-4(산업환경)
KN 14-2(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KN 20(방송수신기 및 관련 기기류)
KN 24(정보기기류)
KN 24(정보기기류/음압시험 제외)
KN 24(정보기기류/잡음전력시험 제외)
KN 24(정보기기류/음압 및 잡음전력시험 제외)
KN 51(전기철도기기류)
KN 51(전기철도기기류/펄스자기장 시험 제외)

KN 60601-1-2(의료기기류)
KN 61547(조명기기류)
KN 60974-10(아크용접기)
KN 61000-6-1(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KN 61000-6-2(산업환경)
KN 60945(해상항해용 무선설비)
KN 17(가정용 무선전력전송기기)
KN 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애방지 시험)
KN 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
KN 61800-3(가변속 전력구동기기)
KN 12015(승강기 전자파 장애방지 시험)
KN 12016(승강기 전자파 내성 시험)
KN 101(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 시험)
KN 15194(전기자동차)

□ 기본단가

[단위 : 원]

제 품 구 분			
소형 단상 (주1)	중형 단상 (주2)	대형 단상 (주3)	대형 3상 (주3)
1,412,000	2,118,000	2,824,000	4,396,000

(주1) 소형 : 20kg 미만의 제품으로 1인이 운반/설치 가능한 제품

(주2) 중형 : 20kg 이상 50kg 이하의 제품으로 2인이 운반/설치 가능한 제품

(주3) 대형 : 50kg 이상의 제품으로 3인 이상이 운반/설치하는 제품

(주4) KN 301 489 규격은 적합인증 대상 기자재의 전자파적합성(EMC) 표준단가 적용

□ 추가 사항

- 해당 시험종목군이 2이상인 복합기기의 경우에는 해당 시험종목군별 기본단가를 합산한 금액으로 함
- 해당 시험종목군의 시험모드가 2이상일 경우의 표준단가는 기본단가 외에 아래 계산식과 같이 시험 모드수(시험횟수)에 따른 추가단가를 부가하여 산정한다.

$$\text{표준단가} = \text{기본단가} + \text{추가단가} = \text{기본단가} + \{1/2(\text{시험모드} - 1) \times \text{기본단가}\}$$
- 부가가치세(VAT)는 제외 금액임

6.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의 무선 표준단가

☐ 기본단가

시험종목	기본단가 [단위 : 원]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1,100,000

☐ 추가 사항

- 추가단가는 적합인증 대상 기자재 무선 표준단가의 추가사항 적용
- 부가가치세(VAT)는 제외 금액임

7.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의 전자파강도 표준단가

☐ 기본단가

- 지정시험기관 실 소요단가 적용
- 부가가치세(VAT)는 제외 금액임

<참고> 적합성평가 기준별 표준단가는 '(사)한국정보통신시험기관협회'의 최근 권장 시험수수료와 '국립전파연구원'의 시험수수료를 고려하여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산정한 단가임

【별표 4】

신청기업 사업참여 제한기준

☐ 신청기업 사업참여 제한기준

제 한 사 유	제한기간
○ 운영지침을 위반한 경우	6개월
○ 수행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경우 ○ 수행기관의 현장 확인을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1년
○ 인증서, 관련문서의 위.변조 및 허위 제출한 경우	2년